

# 가정상담

# 6

201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통권 418호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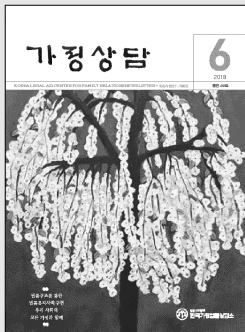


상담소는 지난 5월 11일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 -호주제 폐지 10년, 사라지지 않은 호주제의 잔재 부성주의'를 주제로 가정의 달을 맞아 창립 62주년 기념 첫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관련기사 28면)



본소에서는 지난 5월 9일 8층 강의실에서 서울시와 함께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련기사 29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수양벚나무〉

4• 이 달의 메시지

6•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7년도 상담 통계 ③ 성년후견

16• 특집 II |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 심포지엄 ①

21• 가정폭력상담실

24• 인터넷 상담

25• 새로 들어온 책과 상담소 자료집

26• 결혼과 인생(184) 영화이야기

레이디 버드 \_ 김용언

28• 상담소 소식

30• 지부 소식

32• 상담통계

33•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 이 달의 메시지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  
상담소의 역할도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해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 다음해의 상담소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언제나 빠지지 않는 중장기 계획으로 '북녘에서의 상담소 사업'이 있습니다. 그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 땅에도 상담소를 열고 가정문제 상담에 나설 것이라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담소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틈틈이 북한 관련 법제나 사회 상황 등에 관해 연구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한 편으로는 참으로 막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북핵문제가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처럼 불안감이 커졌던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불안했던 마음이 무색하게도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화해, 평화 분위기로 급물살을 타면서 급변하는 현재 상황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상담소의 오랜 꿈이 조만간 현실화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설렘을 갖게 합니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일단락되고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이산가족의 문제는 사회의 오랜 과제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한필성, 한필화 남매의 안타까운 사연부터 1983년 KBS 텔레비전을 통해 증계되면서 전 국민을 TV 앞에 묶어 놓았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 전쟁과 분단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잠깐 다녀올게” 혹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데리러 올게” 하던 헤어짐이 60년을 넘어서, 신혼의 부부는 백발이 되고 젖먹이 막냇동생이 노년에 접어든 세월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리다 결국은 눈을 감은 이들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우리 민족사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산가족의 해묵은 한을 풀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 들어 탈북민들이 증가하면서 이 또한 새로운 이산가족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니 분단과 갈등의 과정에서 이산가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과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북 관계가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전진하고 교류가 확대된다면 일차적으로 현재의 탈북민들을 포함한 이산가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혼인관계, 재산문제 등은 물론이고 문화적, 정서적, 관습적 차이에서 비롯된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마찰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편으로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형태의 가족갈등이라 할지라도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상담소에서 도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건이 허락된다면 평양과 개성 등을 중심으로 상담소의 지부를 설치하여 북측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소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문제 또한 있게 마련이니,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 역량을 쌓아온 상담소는 북한 주민의 가정문제에 있어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7일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 이후 6월 12일 북미회담이 결정되면서 설레었던 마음이 결렬 소식 등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2차 판문점 회담과 북미회담 재개 소식으로 이어지는 숨 막히는 순간들 속에서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고 상담소의 사명을 돌아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쓰는 지금은 이렇듯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정상담>을 받아 보실 즈음이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어 있을지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렙니다. 바람대로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면서 상담소 또한 차분히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소식 속에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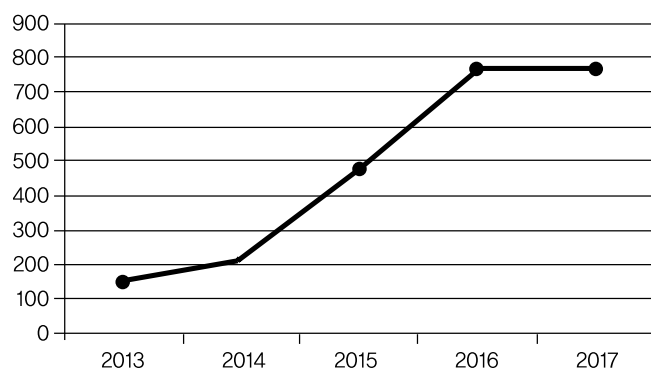
## 시행 첫 해인 2013년 143건 상담에서 2017년에는 761건으로 증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2,347건의 성년후견 상담을 진행하였다.

성년후견제이란 뇌병변, 치매, 정신병, 발달장애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및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상담 건수가 143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211건, 2015년에는 469건, 2016년에는 763건, 2017년에는 761건으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성년후견 상담건수



### 성년후견 상담 내담자 및 상대자에 대한 분석

본 상담소에서는 2017년 4월에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진행된 총 1,586건에 대한 성년후견 상담 통계를 분석 발표하였고, 이번에는 2017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총 761건의 성년후견 상담 통계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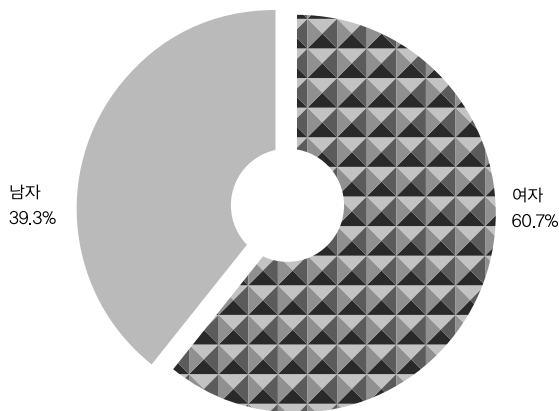
성년후견 상담을 내담자 및 상대자의 성별과 연령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미상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 1. 내담자

##### 1) 남녀별

성년후견에 대해 문의하러 온 내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은 462명(60.7%), 남성은 299명(39.3%)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약 1.6배가량 많았다.

| 성 별 | 수(명) | 백분율(%) |
|-----|------|--------|
| 여 성 | 462  | 60.7   |
| 남 성 | 299  | 39.3   |
| 합 계 | 761  | 100.0  |



## 2) 연령별

내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은 50대(167명, 36.2%)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114명, 24.7%), 40대(81명, 17.6%), 70대(71명, 15.4%), 30대(20명, 4.3%), 80대 이상(6명, 1.3%), 20대(2명, 0.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대(88명, 29.4%)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대(77명, 25.8%), 40대(59명, 19.7%), 70대(37명, 12.4%), 30대(19명, 6.4%), 80대 이상(13명, 4.3%), 20대(6명, 2.0%)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합하여 살펴보면, 50대(244명, 32.1%)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202명, 26.6%), 40대(140명, 18.4%), 70대(108명, 14.2%), 30대(39명, 5.1%), 80대 이상(19명, 2.5%), 20대(8명, 1.1%)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이 본 상담소에서 진행된 전체 면접상담(총 19,818건)에서는 27.1%였으나 성년후견 상담에서는 43.3%

로 나타나 성년후견을 문의하러 오는 내담자도 일반 상담의 내담자보다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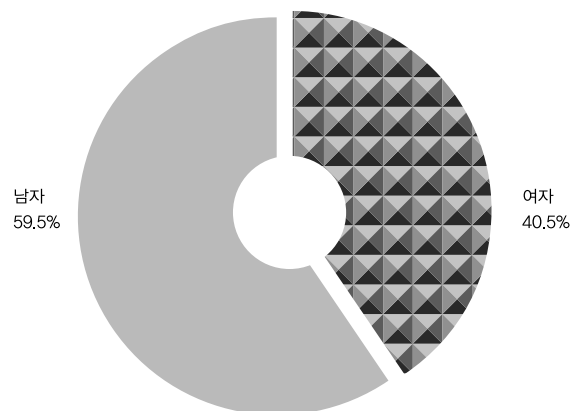
## 2. 상대자

### 1) 남녀별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308명(40.5%), 남성은 453명(59.5%)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5배가량 많았다.

성년후견에 대해 알고자 찾아온 내담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던 반면(여성 60.7%, 남성 39.3%)에 요보호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여성 40.5%, 남성 59.5%).

| 성 별 | 수(명) | 백분율(%) |
|-----|------|--------|
| 여 성 | 308  | 40.5   |
| 남 성 | 453  | 59.5   |
| 합 계 | 761  | 100.0  |



| 연 령 |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 합계    |
|-----|--------|-----|-----|-----|------|------|------|------|--------|-------|
| 여 성 | 수(명)   | —   | 2   | 20  | 81   | 167  | 114  | 71   | 6      | 461   |
|     | 백분율(%) | —   | 0.4 | 4.3 | 17.6 | 36.2 | 24.7 | 15.4 | 1.3    | 100.0 |
| 남 성 | 수(명)   | —   | 6   | 19  | 59   | 77   | 88   | 37   | 13     | 299   |
|     | 백분율(%) | —   | 2.0 | 6.4 | 19.7 | 25.8 | 29.4 | 12.4 | 4.3    | 100.0 |
| 합 계 | 수(명)   | —   | 8   | 39  | 140  | 244  | 202  | 108  | 19     | 760   |
|     | 백분율(%) | —   | 1.1 | 5.1 | 18.4 | 32.1 | 26.6 | 14.2 | 2.5    | 100.0 |



성년후견이 개시될 경우 일반적으로 후견인에게는 피후견인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재산 관련 법정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 부여되는데 피후견인에게 관리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과 관련한 상담이 현저하게 적었다. 반면에 피후견인에게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재산 보유 비율이 높고 고령자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해 상대자 중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 2) 연령별

상대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은 80대 이상(76명, 36.9%)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70대(34명, 16.5%), 50대(29명, 14.1%), 60대(24명, 11.7%), 40대(22명, 10.7%), 20대·30대(각 10명, 각 4.8%), 10대(1명, 0.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0대(49명, 18.2%)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대(47명, 17.5%), 60대(43명, 16.0%), 50대(40명, 14.9%), 80대 이상(35명, 13.0%), 20대(32명, 11.9%), 30대(18명, 6.7%), 10대(5명, 1.9%)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합하여 살펴보면, 80대 이상(111명, 23.4%)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70대(83명, 17.5%), 40대·50대(각 69명, 각 14.5%), 60대(67명, 14.1%), 20대(42명, 8.8%), 30대(28명, 5.9%), 10대(6명, 1.3%) 순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비율이 높았고, 60대 이상이 55.0%로 절반을 넘었다.

## 상담사례 분석

본 상담소에서 진행된 성년후견 상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치매나 질병 등으로 인해 법률행위가 어려운 고령의 부모나 배우자를 위해 성년후견을 문의해왔고, 일부 내담자들은 선천적 장애나 사고로 인해 법률행위 능력이 부족한 성인자녀나 형제들을 위해 성년후견을 문의해왔다. 이 때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후견인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등을 통해 장래에 재산을 받을 예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이가 피후견인의 부모나 배우자일 때에는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없었으나 형제나 자녀인 경우에는 다른 형제 및 자녀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

아래에서는 본 상담소의 상담 건 중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례들을 후견인 후보자, 다툼의 주체, 정신적 제약의 원인, 청구의 목적 등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 1. 후견인 후보자에 따른 구분

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부, 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 사촌오빠나 매형 등 기타 친족이 있었다. 또한 피후견인의 친족이 없거나 있어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형편상 친족이 피후견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 가까워서 피후견인을 돌보던 이웃이 후견인이 되고자 하였다. 한편 보호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본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은 부담스러워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 요청해 온 경우도 있었다.

| 연령  |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 합계    |
|-----|--------|-----|------|-----|------|------|------|------|--------|-------|
| 여 성 | 수(명)   | 1   | 10   | 10  | 22   | 29   | 24   | 34   | 76     | 206   |
|     | 백분율(%) | 0.5 | 4.8  | 4.8 | 10.7 | 14.1 | 11.7 | 16.5 | 36.9   | 100.0 |
| 남 성 | 수(명)   | 5   | 32   | 18  | 47   | 40   | 43   | 49   | 35     | 269   |
|     | 백분율(%) | 1.9 | 11.9 | 6.7 | 17.5 | 14.9 | 16.0 | 18.2 | 13.0   | 100.0 |
| 합 계 | 수(명)   | 6   | 42   | 28  | 69   | 69   | 67   | 83   | 111    | 475   |
|     | 백분율(%) | 1.3 | 8.8  | 5.9 | 14.5 | 14.5 | 14.1 | 17.5 | 23.4   | 100.0 |

## 1) 부 또는 모

## ● 내담자 50대 여성

아들이 현재 28세인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은 내가 아들과 관련된 일들을 무리 없이 처리해 왔는데 얼마 전 은행에서 아들의 통장을 갱신하려고 하니 아들의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들은 장애가 심각하고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내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방법은?

## ● 내담자 60대 남성

아들이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 있다. 아들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아들이 저러고 있으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아들의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 2) 조부모

## ● 내담자 70대 여성

손자가 5년 전 루게릭병에 걸렸다. 처음에는 온 식구가 달려들어 그 아이를 돌보았으나 점점 지쳐갔고 결국 가족 간에 갈등이 깊어져 며느리가 손을 들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가고 있다. 아들은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퇴근 후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손자가 성년이 되어 아들이 아버지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바쁜 아들을 대신해 할머니인 내가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며느리도 이에 동의하였다.

## ● 내담자 70대 남성

아들이 이혼하고 필리핀으로 떠났다. 그 바람에 손주 두 명을 우리 내외가 키웠다. 그런데 큰손주가 학교에서 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은 아들이 가끔

한국에 나와 이러저러한 일들을 처리해 주고 갔었는데 현재는 아들도 한국에 나오지 않고 큰손주도 성인이 되어서 은행일을 처리하러 갔더니 후견인 선임을 해오라고 한다. 내가 손주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 3) 배우자

## ● 내담자 70대 남성

아내가 치매 초기인 듯하다. 얼마 전 오전 10시 즈음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나가서는 저녁이 될 때까지 들어오지를 않아 걱정되어 전화하고 정류장에 나갔다. 아내가 낮에 길을 전혀 모르겠더라며 본인도 치매같다고 하였다. 아직 치매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내는 현재 81세로 한해 한해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담자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아내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자 한다.

## ● 내담자 70대 여성

남편이 현재 90세인데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병환으로 누워 있는 지가 10년이 넘었다. 수술 전에는 손도 움직였는데 지금은 말도 못하고 손도 못 움직이며 누워만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상속인들의 동의만으로 병원비를 낼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이제는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한다. 때문에 법원에 오게 되었고, 후견인은 배우자인 내가 되려고 한다. 절차는?

## 4) 형제자매

## ● 내담자 50대 남성

여동생이 지적장애 2급이다. 여동생은 결혼해서 1남1녀를 두었으나 얼마 전 사별하였고, 조카들 두 명 모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여동생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현재 요양병원에 계신다. 다른 형제들이 있기는 하나 다들 생활형편이 어렵다. 여



동생의 남편이 사망한 후 약 3,200만원 가량 보험금이 나와 그 돈을 모두 여동생 통장에 넣어주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생활이 엉망이다. 내가 여동생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 ● 내담자 60대 여성

큰언니가 현재 혼자 살고 있는데 지적 능력이 떨어진 다. 오래 전에 결혼을 했었고 딸도 하나 낳았는데 현재 그 아이 역시 어디 있는지 전혀 행방을 알지 못한다. 정부에서 얼마 보조를 받고 있는데 제대로 섬도 할 줄 몰라 사는 게 엉망이다. 내가 언니의 후견인이 되어 언니를 돌보고자 한다.

### 5) 자녀

#### ● 내담자 70대 남성

내담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후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 동생과 의논 끝에 어머니를 동생 집 근처 요양원에 모셨다. 문제는 동생이 어머니의 노령연금 등을 다 빼서 무단으로 사용했고, 어머니를 찾아가 보지도 않았다. 걱정이 되어 어머니를 다시 내담자가 있는 서울의 요양원으로 모셨다. 동생은 여전히 어머니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바로 빼가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어머니는 95세이고 지능 수준은 5-6세 정도이다. 내담자가 어머니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 ● 내담자 40대 여성

어머니가 3주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아버지는 오래 전 돌아가셨고, 자녀는 나 혼자이다. 내가 어머니의 후견인이 되어 어머니를 돌보고자 하는데 절차는?

### 6) 기타

#### (1) 기타 친족

#### ● 사촌 오빠 (내담자 70대 남성)

사촌 여동생이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지 한 달이 넘었다. 여동생은 오래 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혼하였으나 이혼하였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모두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 새로 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 사촌 여동생의 은행 계좌에 약 1억원 가량의 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병원비를 지불하려고 해도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은행에서는 후견인 지정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내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 ● 매형 (내담자 60대 남성)

처남이 이혼 후 사업마저 실패해 자포자기 상태로 살았다. 매일 술에 빠져 지냈고 우울증도 심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자녀는 없고 장인, 장모도 모두 돌아가셨다. 장모 사망 후 처남 앞으로 약 1억원 가량 재산이 상속되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아내는 내가 처남의 후견인이 되었으면 하는데 내가 처남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 (2) 타인

#### ● 제3자 (내담자 50대 여성)

여동생이 경계성 인격장애로 20년 이상 약을 먹고 있다. 심하면 입원도 하고 2년 전부터는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는 어머니가 병원비와 용돈 등을 주고 있으나 어머니 사망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어머니에게 재산이 많아 그 여동생이 상속받을 뭇도 상당할텐데 여동생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다 써버리고 멀쩡한 물건도 버리는 등 경제관념이 전혀 없다. 오빠나 내가 후견인이 될까도 생각해 보았으

나 공격적인 여동생을 응대할 자신이 없다. 법원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주었으면 한다.

#### ● 이웃 (내담자 40대 여성)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 어머니는 일본인 아버지와 혼인하여 나와 오빠를 낳았다. 아버지와는 이혼하였고, 나와 오빠 모두 현재 일본에 살고 있다. 어머니의 치매 소식을 듣고 한국에 나왔으나 나와 오빠가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형편은 안 된다. 어머니의 이웃인 한 아저씨가 있는데 그동안에도 그 아저씨가 어머니를 보살펴온 것 같다. 나와 오빠 모두 그 아저씨가 어머니의 후견인이 되었으면 하는데 가능한가?

## 2. 다툼의 주체에 따른 구분

후견인 후보자가 평소 갈등이 없는 부모이거나 외자녀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혼으로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던 부모이거나 다툼이 있는 자녀, 이복형제 등인 경우에는 서로 믿지 못해 갈등이 많았다. 이들은 서로 먼저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하였고, 관심이 없다가도 다른 이의 청구를 막기 위해 후견심판청구를 하기도 하였다.

### 1) 모와 부

#### ● 내담자 60대 여성

두 자녀를 낳고 살다가 이혼하였다. 이혼하면서 딸은 나와 살았고, 아들은 전남편에게 가서 살았다. 딸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크게 사기를 당하면서 2010년에 자살기도를 하였다. 그로 인해 뇌손상을 많이 입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느날 보니 이혼한 전남편이 딸에 대한 금치산 선고를 받아 후견인이 되어 있었다. 이혼 후 전남편은 딸과 만난 적도 거의 없을 정도로 무관심했다. 내가 딸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 2) 자녀와 자녀

#### ● 내담자 50대 남성

어머니가 2달 전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격리병동에 있다. 작년에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는 여동생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 등으로 그 여동생과 갈등이 많았다. 어머니도 그 여동생과 다투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현재 여동생은 어머니 병문안도 안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많이 나와 어머니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는데 내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 ● 내담자 50대 여성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기는 했지만 걸어다니고 일상생활이 가능했었다. 그런데 큰언니가 모시겠다고 하고는 내게 5년 넘게 보여주지 않았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아 어머니가 걱정되어 방송국에 제보를 하였더니 언니가 보여주는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나빠져 있는 모습을 보니 큰언니가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라도 내가 모시기 위해 성년후견을 신청하였는데 큰언니가 반대하고 있다.

#### ● 내담자 60대 여성

아버지는 교직에 있다 퇴직하였고 초기 치매 판정을 받았으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 아버지는 오래 전에 어머니와 이혼 후 재혼해 자녀 둘을 더 낳았다. 아버지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자 나와 배다른 남동생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대한 성년후견을 청구했다. 그러자 큰오빠 역시 성년후견을 청구한 후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셨다. 아버지는 다시 집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큰오빠가 반대하고 있다. 나는 누가 후견인이 되든 상관없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다.

## 3) 형제와 자녀

## ● 내담자 60대 남성

큰형님이 사업을 크게 해서 재산이 상당하다. 그런데 3년 전 형수가 사망한 후부터는 갑자기 쇠약해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형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상당한 재산을 탕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님을 괴롭혀 돈을 가져가고 있다. 형님은 그 아들이 두렵다고까지 한다. 조카가 형님에 대한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형님의 후견인이 될 수는 없는가?

## 4) 형제와 형제

## ● 내담자 60대 여성

미혼인 막내 동생이 일하다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다. 몸을 잘 못 쓸 뿐만 아니라 정신 능력도 많이 부족해졌다. 동생 앞으로 보상금이 상당히 나왔는데 돈이 나오자 갑자기 평소에 연락도 자주 하지 않던 오빠가 찾아와 마치 자신의 돈인 양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동생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는데 돈을 잘 관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 나는 어떻게든 동생의 돈을 지켜주고 싶은데 내가 후견인이 될 수도 있는가?

## 5) 배우자와 자녀

## ● 내담자 70대 여성

남편이 초기 치매 판정을 받았다. 현재 사는 집은 남편 명의이고 시가로 5억원 남짓 한다. 그런데 남편이 진단을 받자 아들이 집을 팔아 시골로 요양을 가라고 한다. 그러면서 남은 돈은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 평생 벌어서 겨우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아들이 저렇게 나오니 너무 화가 난다. 서울에 계속 살면서 치매가 더 심해지지 않게 진료를 잘 받았으면 한다. 내가 남편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 6) 자와 며느리

## ● 내담자 60대 남성

어머니가 96세이다. 어머니는 형님댁에서 계속 모셔왔다. 그러다 형님이 10년 전 사망하였다. 이후 어머니와 형수 단 둘이 생활해왔다. 그런데 몇 달 전 어머니로부터 형수가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대로 처분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내가 어머니의 후견인이 되고자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였더니 형수가 반대하고 나왔다.

## 7) 복지기관과 형제

## ● 내담자 60대 남성

동생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동생은 미혼이고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다. 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후견인으로 제3자인 복지기관이 지정되었다. 법원에서는 내가 동생의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다는데 이렇게 될 것이었으면 애초에 성년후견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내가 다시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는 없는가?

## 3. 정신적 제약의 원인에 따른 구분

피청구인의 정신적 제약은 선천적 장애나 고령이나 질병에 따른 능력 저하, 사고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가 대부분이었다. 선천적 장애에는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등이 있었고, 고령자에게는 뇌졸중과 치매 등 뇌기능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다. 한편 연령대를 불문하고 중증 질병이나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갑자기 정신적 제약에 빠진 경우도 많았다.

## 1) 지적장애

## ● 내담자 50대 여성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다. 본인의 이름 정도만 겨우 말



하고 쓸 줄 아는 정도이다. 얼마 전 아이가 성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모든 것을 엄마인 내가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나아질 상황은 아니다. 엄마인 내가 성년후견인이 되려고 하는데 절차는?

## 2) 뇌출혈 등 뇌병변

### ● 내담자 50대 여성

아버지가 어느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현재는 '응' 정도의 단답형 답변에는 하지 못하고 팔다리에도 마비가 와 거동도 불편하다. 병원비를 인출하고자 아버지를 모시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담당 직원이 아버지의 의사를 판단할 수 없으니 후견인을 선임하여 오라고 하였다. 어머니를 후견인으로 하고 싶는데 남동생이 반대할까 걱정이다. 남동생은 평소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 탕진하곤 하였다.

## 3) 고령에 따른 치매

### ● 내담자 60대 남성

어머니가 91세이다. 작년에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있는 후로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다. 현재 월 400만원 정도의 치료비와 간병비가 들고 있다. 비용은 어머니와 형제들의 돈으로 함께 부담하려고 한다. 어머니의 돈을 찾으려면 성년후견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절차는?

## 4) 정신병

### ● 내담자 40대 여성

언니는 어려서부터 정신병을 앓았다. 꾸준히 치료를 받아 조금 호전되는 듯하여 결혼도 하였으나 결혼 후 증세가 더욱 심해져 결국 형부와도 이혼하였다. 아이들은 형부가 모두 데려갔다. 언니는 현재 기초수급자여서 국가

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돈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활이 엉망이다. 언니가 지나치게 폭력적이어서 두렵다. 어머니가 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데 절차는?

## 5) 건강악화에 따른 기능 저하

### ● 내담자 70대 여성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암으로 수술을 두 번 하였고, 현재는 요양병원으로 옮겨 드렸다. 반복된 수술에 몸이 약해졌고, 치매까지 와서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언니가 결혼을 했으나 사별하였고, 아들이 있으나 남편의 전혼자녀였을 뿐 언니가 낳은 아들은 아니다. 유일한 혈육인 나는 그동안 미국에 있어서 언니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였다. 언니가 병을 앓게 된 후부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니의 재산을 빼먹은 것 같다. 언니의 통장을 보니 이해 안 되는 거래가 잔뜩 있다. 내가 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 6) 사고

### ● 내담자 60대 남성

아내가 1년 3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현재 코마 상태이다. 모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 병원비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내 명의의 은행통장과 부동산을 처분하여 병원비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4. 청구 목적에 따른 구분

성년후견청구를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에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가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재산관리 관련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득활동을 하던 피청구인이 갑자기 요보호상태에 빠질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병원비 지불 문제가 발생되고 이차적으로는 피청구인의 경제활

동 중단으로 인한 생활고가 시작된다. 이에 상담소를 찾은 내담자들은 상대방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처분, 예적금 인출, 보험금 수령 가능 방법들을 주로 문의해 왔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요보호자인 피청구인의 정신적 제약을 악용해 재산을 갈취하거나 신상을 위태롭게 하는 이들의 행동을 저지하고자 서둘러 상담소를 찾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보전, 장래 받게 될 상속재산, 정부의 지원금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문의해왔다. 한편, 절차가 복잡한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보호에 부담을 느껴 후견인 변경에 대해 문의해 온 경우도 있었다.

### 1) 부동산 관리

#### ●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이 3주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 의식이 없다. 뇌수술을 두 번 받았으나 병원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다. 남편이 넘어지기 전 남편 명의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당장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 동산 등 재산 처분

#### ● 내담자 30대 남성

아버지가 트럭을 이용해 행상을 해왔다. 그런데 6개월 전 갑자기 운전 중 쓰러져 현재 병원에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 계신다. 병원에서는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트럭은 방치되어 있는 채 할부금만 계속 나가고 있다. 이 트럭을 처분하고 싶은데 방법은?

### 3) 예(적금) 관리

#### ● 내담자 60대 남성

어머니가 작년 2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현재 장애 1급으로 요양원에 있다. 어머니의 요양비를 내려면 어머

니 명의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성년후견인이 되려고 하는데, 진단서를 장애증명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 받으러 왔다.

#### ● 내담자 50대 여성

어머니가 현재 중환자실에 있다. 의료비 긴급지원을 받으려고 하자, 어머니 통장에 현재 500만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므로 500만원을 모두 사용한 후에 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찾아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하니 은행에서는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판결받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텐데 당장 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4) 보험금 수령

#### ● 내담자 70대 남성

아들이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지 2달이 지났고 현재 의사표시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아들이 직접 와서 수령하든가 후견인 지정을 받아서 오라고 한다. 후견인으로 지정받는 데에는 얼마나 걸리는가? 성년후견인 지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 5) 재산 보전

#### ● 내담자 50대 남성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 후 이혼과 혼인신고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 5년 전 처음 이혼하면서 수억 원 가량의 현금을 모두 새어머니에게 주었다. 이후 다시 혼인신고하였고, 다시 이혼하면서 부동산의 일부를 새어머니에게 주었는데 얼마 전 나머지 부동산의 임대료를 새어머니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또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88세 고령인 아버지는 15세 가량 차이나는 새어머니에게

계속 휘둘러 의사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버지에게 치매 증상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가?

#### ● 내담자 30대 여성

어머니가 오래 전부터 교회에 심취해 계속해서 거액을 헌납해왔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돈을 냈고, 그로 인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세 채나 팔았다. 현재 어머니에게 남은 재산은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뿐이고, 월 150만원을 받고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얼마 전부터는 해외선교에 쓸 돈을 보태야 한다며 나에게까지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보증금마저 다 날려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어머니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려면?

### 6) 신상보호

#### ● 내담자 50대 남성

아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많이 나빠지고 있다. 슈퍼에서 사탕을 세 번이나 훔쳐 두 번은 경찰서에서 봐주었는데 마지막에는 벌금을 물기도 하였다. 시골에 아내 명의로 된 임야가 있는데 누가 달라고 하면 순순히 줄 사람이다. 돈이야 그렇다 쳐도 아내가 어디 가서 험한 꼴을 당할까 너무 걱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내의 후견인이 되어 돌보고자 한다.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동의해 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 7) 개호

#### ● 내담자 60대 여성

전남편과 이혼한 지 오래되었다. 이혼 후 성년이었던 딸이 갑자기 사고로 심신미약 상태가 되었다. 이에 전남편이 딸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다. 그런데 전남편은 내가 딸을 만나는 것조차 방해하였다. 무언가 이상해 알아보았

더니 딸이 출신질식 및 성학대로 병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나는 전남편을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나를 영리악취로 고소하였다. 딸의 성년후견인을 나로 변경한 후 내가 딸을 개호하고자 한다.

### 8) 빚 청산

#### ● 내담자 60대 남성

동생이 지적장애 3급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이 명의도용을 당해서 큰 돈을 대신 갚고 있었다. 너무 억울해 관할 구청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해 주었다. 이제라도 내가 동생의 후견인이 되어 억울하게 떠안게 된 빚을 청산해 주고 싶은데 방법은?

### 9) 소송 진행

#### ● 내담자 70대 남성

2014년에 이혼했다. 이후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자 이혼한 전처가 나 모르게 얼마 전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현재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데 내가 몸이 좋지 않아 나를 돌봐주는 요양보호사가 내 후견인이 되어 소송을 대신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데 가능한가?

### 10) 후견인 변경

#### ● 내담자 50대 여성

7년 전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제부가 법원에 동생에 대한 금치산 신청을 했고, 제부가 동생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다며 언니인 나더러 동생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라고 한다. 동생은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일 내가 동생의 후견인이 될 경우 지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가?

김진영 상담위원

## 자녀의 성(姓)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요약)

### I. 조사 목적

지난 2005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자녀의 성과 본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도 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호주제 하에서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것으로 강제하였으나, 개정된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해 모성 승계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부성강제주의가 완화되고 성평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성과 본이 부성을 원칙으로 하여 결정되고 모성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으로써 부성강제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부성주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모와 남·녀를 합법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가족구성원의 복리구현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민법 제781조가 개정되어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된 지금 국민들은 과연 부성주의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 민법은 과연 국민들의 의식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13년에 제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며, 이번 2018년 제2차 조사를 통하여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성평등과 가족복리를 위한 입법과 정책전환요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조사는 2018년 3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서 본 상담소 본부 및 전국 27개 지부와 법원, 각급 학교, 지하철, 전시장, 회사, 관공서 등에서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는 방식(3,060부)과 온라인 설문조사(홈페이지와 모바일: 243부)를 하는 방식으로 총 3,303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배포한 설문지는 모두 수거되었으며, 수거된 자료는 모두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표본의 최대한계허용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pm 3.8\%$  포인트로 나타났으며, 수집된 자료는 오류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PC기반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지난 5월 11일 열렸던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본소의 조사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심포지엄은 관련기사 28면 참조.



### III.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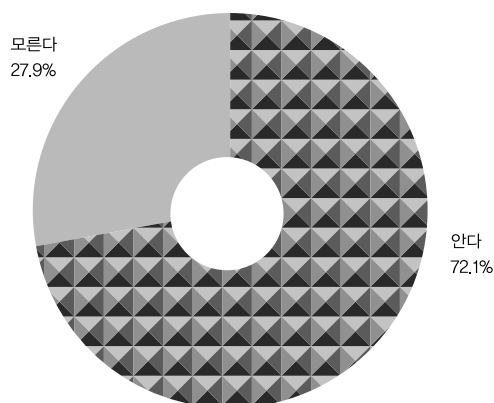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 3,303명 중 남성은 1,382명으로 41.8%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1,921명으로 58.2%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전체 3,303명 중 20대가 663명(20.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0대 654명(19.8%), 30대 608명(18.4%), 50대 599명(18.1%), 60대 380명(11.5%), 10대 207명(6.3%), 70대 이상 192명(5.8%)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전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각 남녀별, 연령별의 의식을 고루 비교해 볼 수 있었다.

#### 2.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인식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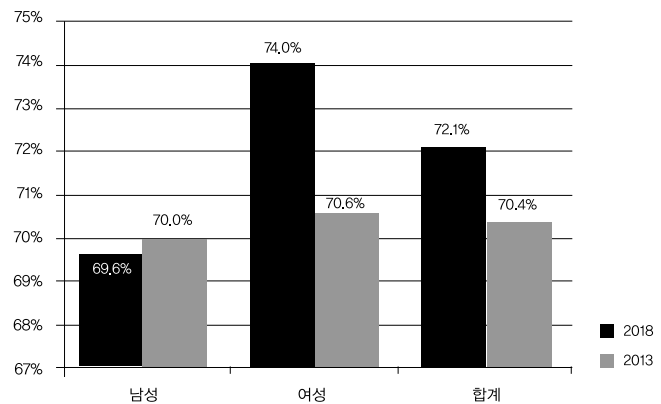
##### (1)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인지 여부

전체 응답자의 72.1%가 부성주의원칙을 알고 있었다. 남녀별로는 남성(69.6%)에 비해 여성의 인지도(74.0%)가 다소 높았으며, 2013년 조사에 비해 여성의 인지도는 3.4% 높아졌다(70.6% → 74%). 연령별로는 20대(80.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0대(68.6%)가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자녀의 성·본은 부성주의원칙에 따른다는 것을 상당수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인지여부 (2018년)

| 구분  | 2018년 |       | 2013년 |       |
|-----|-------|-------|-------|-------|
|     | 명     | %     | 명     | %     |
| 안다  | 2,383 | 72.1  | 4,834 | 70.3  |
| 모른다 | 920   | 27.9  | 2,039 | 29.7  |
| 합계  | 3,303 | 100.0 | 6,873 | 100.0 |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인지도 - 남녀별 비교

##### (2)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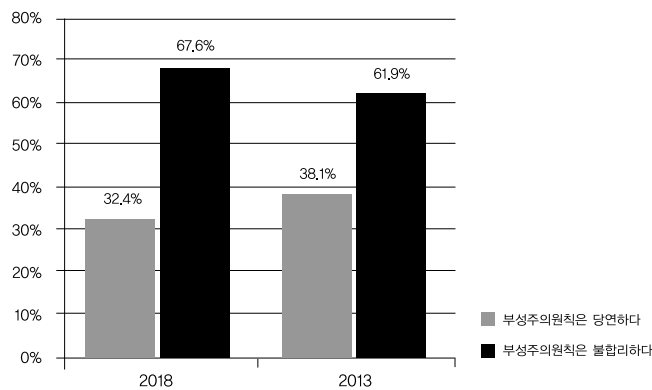
2013년 조사에서보다 5.7% 증가한 67.6%가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여, 지난 5년간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녀별로는 남성의 경우에는 부성주의원칙은 '당연하다'고 한 응답자와 '불합리하다'고 한 응답자의 차이가 9% (45.5% vs. 54.5%) 정도였으나, 여성의 경우 '불합리하다'고 한 응답자가 77.1%로 여성의 대부분은 부성주의원칙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도 '불합리하다'고 한 응답이 2013년 조사보다 7.6%나 증가하여 부성주의원칙이 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에 반한다는 의식이 남성들에게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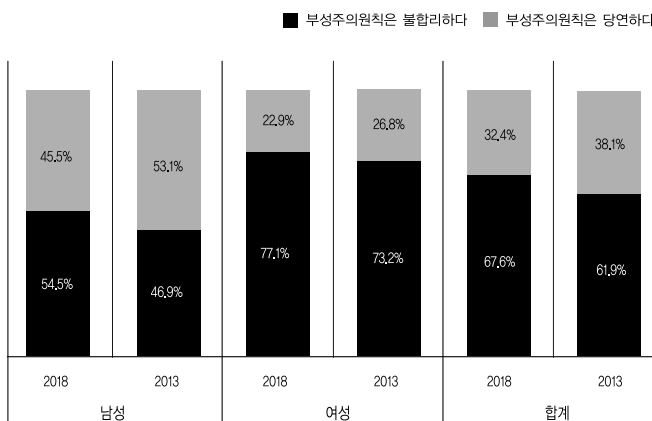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연령층에서는 평균(67.6%)을 상회하여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고 인식한 반면, 50대부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성주의원칙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인식차이를 볼 수 있었다. 특히 20대는 83.9%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행 성본 결정제도

가 불합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3년 조사에 비하여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는 의식이 전 연령대에 걸쳐 골고루 높아진 점에 비추어 현행 성본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0대~40대의 여성과 20대 남성의 10명 중 8명은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추어 이러한 인식 변화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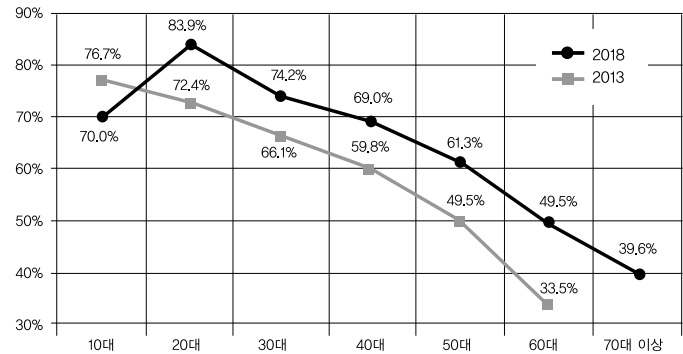
| 구 분            | 2018년 |       | 2013년 |       |
|----------------|-------|-------|-------|-------|
|                | 명     | %     | 명     | %     |
| 부성주의원칙은 당연하다   | 1,069 | 32.4  | 2,621 | 38.1  |
|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 | 2,234 | 67.6  | 4,252 | 61.9  |
| 합 계            | 3,303 | 100.0 | 6,873 | 100.0 |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견 -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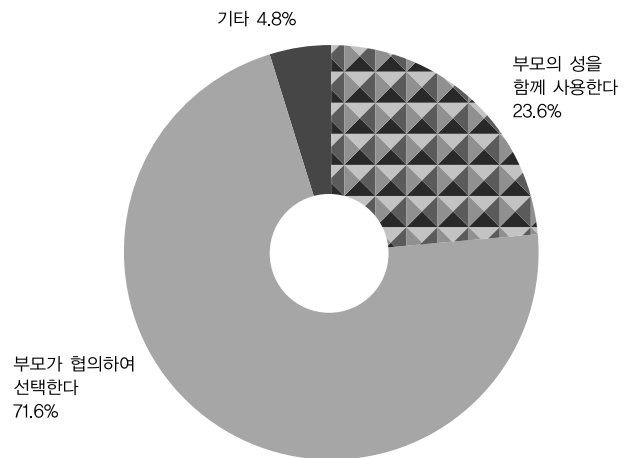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견 - 남녀별 비교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는 의견 - 연령별 비교

### (3) 자녀의 성 결정 방법에 대한 의견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고 한 응답이 71.6%로 가장 많았고, 남녀별에 따른 의견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남성 71.2%, 여성 71.8%)<sup>1)</sup>. 연령대별로 보아도, 전 연령대에서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30대(78.9%)와 20대(76.1%)의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부성주의원칙을 대신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대체방안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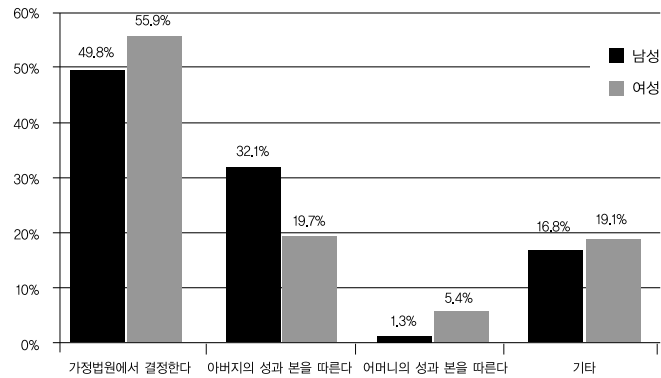
1) 부성주의 원칙이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2,234명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 구 분            | 2018년 |       | 2013년 <sup>2)</sup> |       |
|----------------|-------|-------|---------------------|-------|
|                | 명     | %     | 명                   | %     |
|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한다 | 527   | 23.6  | 817                 | 19.2  |
|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  | 1,599 | 71.6  | 3,261               | 76.6  |
| 기 타            | 108   | 4.8   | 178                 | 4.2   |
| 합 계            | 2,234 | 100.0 | 4,256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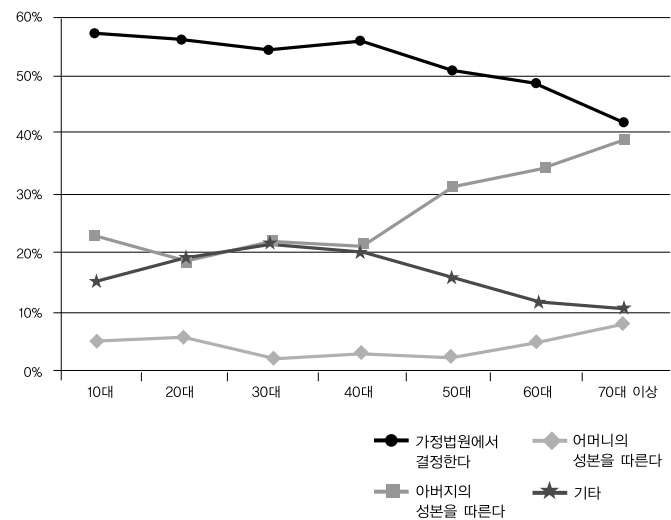
#### (4) 자녀의 성 결정에 대해 부모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성 결정 방법

자녀의 성에 대해 협의가 안 될 경우 남녀 및 모든 연령대에서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50대 이상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 통해 연령이 높을수록 부성주의원칙에 대해 허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구 분            | 2018년 |       |       |       |       |       |
|----------------|-------|-------|-------|-------|-------|-------|
|                | 남성    |       | 여성    |       | 합계    |       |
|                | 명     | %     | 명     | %     | 명     | %     |
|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 267   | 49.8  | 594   | 55.9  | 861   | 53.8  |
|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 172   | 32.1  | 209   | 19.7  | 381   | 23.8  |
|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 7     | 1.3   | 57    | 5.4   | 64    | 4.0   |
| 기 타            | 90    | 16.8  | 203   | 19.1  | 293   | 18.3  |
| 합계             | 536   | 100.0 | 1,063 | 100.0 | 1,599 | 100.0 |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성 결정 방법 - 남녀별비교(2018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성 결정 방법 - 연령별비교(2018년)

## IV. 논의 및 제언

본 조사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7.6%가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대체방안으로 위 응답자의 71.6%가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고 응

2) 2013년 조사에서는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4,252명을 대상으로 자녀 성 결정 방법에 대한 대체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응답자는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총 4,336건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대체방안의 항목으로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응답 항목이 있었는데(80명, 1.9%), 위 표에서는 2018년과 비교하기 위해 이 항목은 제외하였다.

답한 점을 볼 때, 대다수 국민들은 부성주의원칙을 이미 부차별, 성차별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녀의 성 결정제도에 관한 국민 의식은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성평등적인 입법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에서는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이하 제g호에서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등한 개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도 자녀의 성 결정권을 부부의 동등한 권리로 보고 있고, 본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의 자녀 성 결정권에 대한 인식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부성주의원칙에 근거한 자녀 성 결정제도는 국민의 성평등 지향적인 의식을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입법기준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의 성은 출생신고 전까지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민법에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혼인외자이거나, 부부가 혼인신고할 때 미리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모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부부가 자녀의 성에 대한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도록 강요함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법적으로 차별하게 된다. 또한 대다수의 결혼한 부부들은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자녀의 성을 반드시 혼인신고시에만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자녀의 성결정은 자녀의 출생신고 전까지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고, 만약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도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성 미정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법원의 결정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에 부합되게 성 선택의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본 조사에서도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고 한 응답자 중에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가 53.8%로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자녀의 성 결정 방법으로 ‘부모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자녀의 성결정과 관련하여 ‘부성주의원칙’에서 ‘부부의 협의’로 변경하는 것과 성결정의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성주의원칙이 사회적 관습 또는 전통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성 평등정책 및 교육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부터 부성주의원칙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져,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착화된 성차별관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녀 간 사회적 의식의 격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성 평등적인 가족제도를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성 평등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및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의식의 변화 유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자녀의 성 결정 방안에 관해 논의를 하였지만 장래에는 민법 제781조의 성 결정 제도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자녀의 성 결정에 관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 국민 정서와 문화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자녀의 성 결정 문제는 국민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지나친 통제를 줄여나가는 현대사회의 흐름과도 일치하는 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경애 법률구조부장 / 조은경 상담위원



## 사실혼 관계에서의 폭력, 상담 통해 성행 교정 후 원만한 관계 유지하면서 혼인 계획도 세워

사건번호 2016버2\*\*\* 유사강간, 특수감금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2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3회  
등 총 21회 실시

### 상담기간

2017. 3. 28. ~ 2017. 9. 26.

###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4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이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행위자는 초혼이고 피해자는 전혼자녀(1녀, 24세)가 있으나 따로 거주한다. 부부는 양가 가족들과도 왕래하고 장차 결혼식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과 동거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적이 있고, 자신의 선배와 늦은 밤 카톡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키워오다가 2016년 9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옷을 모두 벗기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회칼로

“죽여버리겠다”며 겨누며 위협하는 방법으로 상당시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유사 강간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6개월간 보호관찰 및 6개월간 본소예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본 사건에 대하여 행위자와 함께 어울리던 선배에게 술을 마시고 집에 잘 들어갔는지 묻는 카톡메시지를 보낸 정도인데, 행위자가 과도한 의심을 하고 폭력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건 이후 화해하였으나 대화만 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기에 상담과 교육이 절실하였다.

행위자는 본소에서 제작한 가정폭력의식개선 교육동영상을 시청한 후 “어려서부터 폭력적인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상담에 임하면서 행위자는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집단상담 구성원들과 본인의 사례를 공유하고 위로받으면서 상담초반에 보였던 저항감이 사라지고 협조적이고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신뢰를 잃은 점이 가장 큰 상처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피해자도 많은 갈등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기로 한 결과 마음이 편해졌고 나아가 피해자와의 관계도 편하게 되었다고 보고하면서 향후 부부관계가 더 좋아질 것으로 기



대한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의사소통도 잘 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해에는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고 하였다.

#### 사건번호 2016버2\*\*\* 존속폭행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아들) 개별상담 6회, 정신과상담 1회,  
집단상담 8회, 교육강좌 3회,  
피해자(어머니)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등 총 20회 실시

##### 상담기간

2017. 4. 18. ~ 2017. 10. 17.

##### 상담경과

행위자는 2009년에 결혼하였지만 1년 만에 이혼하고 딸(10세)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 이혼 후 여성들과 교제도 하였지만 전혼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헤어지는 등 스트레스가 많았다. 행위자는 무직으로 자영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쓰며 지냈고, 부모가 행위자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체납하여 채무가 누적되는 문제로 갈등이 심각하던 터에, 2016년 6월 사건 당일, 피해자인 어머니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어깨와 등을 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디스크 수술 후유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는데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태라고 하여 정신과에 연계하여 1회 상담과 약 처방을 받은 후 본소의 상담프로그램에 임하도록 하였다.

상담초기에 행위자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로 무기력하였으며, 현재의 사정을 극복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마

음과 함께 과연 노력하여도 잘 될 것인가 하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행위자의 자존감 회복과 인생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실천 등을 상담목표로 정하였다. 행위자는 집단상담에서 다른 집단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용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변화하였다.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것들 중 이미 자신이 경험한 것들도 있었으며, 딸과 문제되어 상담위탁된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었다고 하였다. 행위자도 배우자로부터의 배신을 경험하고 이혼을 하였기에 지금 배우자와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에게 의견을 말해줄 수 있었고, 집단상담 초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위로가 되었다고 한다. 집단구성원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전과 달리 집 밖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운동도 하며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고, 허리가 다 낫지 않았고 구직활동을 하여도 마땅한 일이 없지만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마음먹게 되었다.

행위자는 생모 얼굴도 모르는 딸이 생모 연락처를 알아 들어가본 카톡에서 재혼 결혼식 사진을 보고 상심했을 때에는 상담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아빠, 엄마 모두 너를 사랑하지만, 부득이 부모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게 된 것이다. 네가 크면 얼마든지 엄마를 보아도 좋다”고 말해주었고, 딸과 함께 처음으로 서울대공원에 다녀오는 등 변화된 아버지 역할과 노력을 보여주었다. 행위자는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으며 자존감이 많이 회복된 상태에서 상담을 종결하였다.

#### 사건번호 2017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0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3회  
등 총 14회 실시

##### 상담기간

2017. 5. 8. ~ 2017. 11. 7.

##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내)와 결혼한 지 14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남 1녀(13세, 12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6년 12월 사건당일, 피해자가 직장 회식때문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두 차례 거머쥐는 등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피해자는 정수기업체에 근무하며 한 달에 한번 직원회식을 하고 늦게 귀가하게 되는데 행위자가 그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하면서 행위자의 이해와 포용을 기대하였다. 또한 행위자의 고지식한 성격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음주 후 주사를 갈등요인으로 꼽으면서 행위자의 언어폭력과 대화법이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행위자는 과일 노점상을 하는데 특히 야간에 장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을 배려하여 주간 개별상담을 중심으로 상담계획을 수립하였다. 행위자 스스로도 언어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및 행위자의 needs를 고려하

여 행위자의 상담 목표를 비폭력대화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 그리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등으로 정하였다. 행위자는 가정폭력, 대화법, 남자의 심리 등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이해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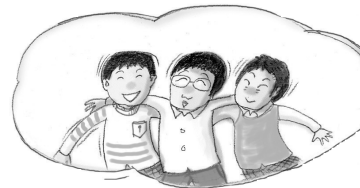
피해자는 상담 중기에 행위자가 이전에 비하여 자신을 많이 배려해주는 등 이해심이 넓어졌다고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였다. 상담 종결 시에는 행위자의 언어폭력의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나 상담 이전에 비하여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하면서, 상담 종료 후 행위자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하기에 그에 대한 대응 및 후속 프로그램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행위자에게는 신체폭력은 물론 언어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 및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향후 노력을 당부하면서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인·터·넷·상·담

Q

전남편은 의사로 5년 전 협의이혼 할 당시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였고, 전남편은 아이가 클 때까지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이혼 후 1년 간만 양육비를 지급하였을 뿐, 이후 양육비 지급을 끊어버렸습니다. 전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있으나 이를 담보로 모두 대출을 받아 이에 대한 강제집행도 불가능하고, 소득도 알기 힘듭니다. 이에 전남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제도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A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 및 등재사유와 날짜가 기재된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작성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2항).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며(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명부 부분을 보냅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2항). 또한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도 명부 부분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누구든지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분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귀하는 전남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위의 내용과 같을 것입니다.

김민선 변호사

# 새로 들어온 책과 자료집 2017.11~2018.5

## 책

희망의 길을 걷다  
나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이훈할 용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2017 양육비이행관리원 우수사례집  
통일과 헌법재판2, 4  
2017 인권상담사례집  
인권과 사회복지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가인 김병로  
2018 법전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9권1집, 2집(상,하)  
2017 양형기준  
친족상속법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안내  
2018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  
2017 이효석 문학상 수상작품집  
제11회 김유정문학상 수상작 작품집  
제63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2018 이상문학상 작품집  
순이 삼촌  
아스팔트  
마지막 테우리  
제7회 문지문학상 수상작품집  
2017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82년생 김지영  
촛불혁명의 뿌리를 찾아서  
2017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II)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 지원현황 및 정책과제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 제고 방안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V)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간보고서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강우일 | 바오로말 | 2017  
존 버드 | 이후 | 2016  
김민정, 정단별, 이정훈 | 청년정신 | 2018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2016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 2017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 2017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 201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7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2017  
엘리자베스 라이커트 외 | 나눔의 집 | 2015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2017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2017  
한인섭 | 박영사 | 2017  
현암사법전집 | 현암사 | 2018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 2017  
양형위원회 | 양형위원회 | 2017  
김주수, 김상용 | 법문사 | 2017  
대법원 | 대법원 | 2018  
법무부 | 법무부 | 2017  
한강 외 | 문예중앙 | 2017  
강영숙 외 | 생각정거장 | 2017  
황정은 외 | 은행나무 | 2017  
김금희 외 | 현대문학 | 2017  
김경옥 외 | 문학사상 | 2018  
현기영 | 창비 | 2017  
현기영 | 창비 | 2017  
현기영 | 창비 | 2017  
박민정 외 | 문학과지성사 | 2017  
임현 외 | 문학동네 | 2017  
조남주 | 민음사 | 2016  
김종철 | 썬물과밀물 | 2017  
조선주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7  
장미혜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7  
이미정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7  
이미정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7  
박선영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7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7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6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6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6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7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7

좋은책

## 상담소 자료집

제45회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2018 동계 교원직무연수자료: 가족법, 가정폭력특별법 및 폭력예방교육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  
통계로 본 현대 한국 가족의 제문제 III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7

등 179권

최정아 사서

결혼과 인생 (184)



## 레이디 버드

감독 그레타 거윅

출연 시얼샤 로넌, 로리 멧칼프, 비니 펠드스타인



그레타 거윅의 영화 <레이디버드>는 수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10대 시절을 돌이켜보게 한다. 2002년, 캘리포니아 주의 새크라멘토, 고등학교 3학년 크리스틴(시얼샤 로넌)은 본명 대신 스스로에게 지어준 이름 ‘레이디버드’를 고집한다. 레이디버드는 절대로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대학에 갈 생각이 없다. 어떻게든 동부의 유서 깊은 대학교에 입학하여 여기서는 누릴 수 없는 인문학과 예술을 흠뻑 만끽하고 싶어 한다. 빠듯한 집안 형편에 별 관심 없는 딸에게 허를 찌는 현실적인 엄마 매리언(로리 멧칼프), 레이디버드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는 베스트프ренд 줄리(비니 펠드스타인), 레이디버드의 첫사랑 대니(루카스 헤지스), 레이디버드

의 첫 섹스 상대 카일(티모시 샬라메)까지, 레이디버드의 17살 한 해는 갖가지 충동과 화해와 후회와 재도전으로 점철된다.

지금껏 살면서 수많은 성장물을 접했다. 대부분의 주인공은 소년이었다. 외롭거나, 거만하거나, 주변에 온통 범죄자밖에 없거나, 여하튼 갖가지 환경에 처한 여러 타입의 소년들이었다. 그 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른들과 충돌한다. 모험이 다 끝날 때쯤 소년들은 성인 남성으로 향하는 문을 열 준비를 마쳤다. 수많은 성인 여성 혹은 소녀 관객들은 별 수 없이 소년들의 모험에 감정이입하며 그들이 우리 대신 겪어주는 신나는 모험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레이디버드>를 접했을 때의 충격은 남달랐다. 이것은 정말 ‘평범한’ 여자애의 성장영화다. 십 몇 년 전 미국 새크라멘토에 사는 십 대 여자애의 이야기에 마치 ‘우리’ 이야기처럼 즉각 이입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영화가 십 대 여자애들의 어떤 공통분모를 놀랍도록 예리하게 포착했기 때문이다. 변덕스럽고, 늘 무언가(이 정체는 불분명하다. 그저 지금과 다르고, 보다 멋지고, 훨씬 새로운 무언가)를 동경하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화가 나 있고, 자신을 실제로보다 더 멋진 누군가라고 꾸미며 허세를 떠난다. 최선을 다해 나를 멋지게 꾸몄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뒷자리에서는 숨죽인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토록 속하기를 원했던 집

단으로부터 ‘너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 라고 배제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 순간 레이디버드는 모멸감에 휩싸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는다. 영화의 결말, 드디어 꿈꾸던 뉴욕의 대학으로 진학한 레이디버드가 비로소 어른이 될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직전, 자신이 동경하던 무리로부터 배척당하고 비웃음 당한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이 레이디버드가 성인이 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만 18살의 생일을 맞아 ‘법적 성인’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과 나 사이의 불화를, 세상과 나 사이의 거리를 깨닫고 나의 위치를 가늠해보고 거기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 순간이 진짜 성인이 되는 순간이다.

무엇보다 <레이디버드>는 소녀의 성장에 있어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감독 그레타 거윅은 “내가 아는 대부분의 여성은 청소년 시절 각자의 어머니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해야 할 수 없이 복잡한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나는 그 모녀 관계를 영화에 중심에 두고 싶었다”면서 “어머니와 딸 사이의 로맨스가 가장 격정적인 로맨스 중 하나인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 말처럼, 영화의 말미에 이를 때 관객들의 마음을 가장 격렬하게 움직이는 건 레이디버드와 엄마 매리언 사이의 애증이다. 레이디버드는 고등학교 졸업 무도회에 입을 옷을 고르기

위해 엄마와 함께 중고옷가게에 왔고, 엄마는 그녀가 고른 옷을 마뜩찮아한다. 갑자기 그녀는 엄마에게 묻는다. “엄마, 날 좋아해?” 엄마는 당황하며 “널 사랑하는 거 알잖니”라고 답한다. “아니, 날 좋아하냐고. 난 엄마가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는 네가 언제나 최선의 모습이길 바라”라고 답한다. 그건 딸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 그 미묘한 순간에 울컥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랑한다’와 ‘좋아한다’의 차이. 엄마는 딸을 ‘당연히’ 사랑한다. 그러나 엄마와 딸이 혈연으로 맺어져있다 한들 둘은 엄연히 다른 개체이며 둘이 살아온 시공간의 극심한 변화는 둘의 상호이해를 가로막는다. ‘타인’으로서의 딸을 있는 그대로 좋아할 수 있을까? 현실적이고 솔직한 엄마는 그 질문 앞에 머뭇거린다. 그러나 결국,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모녀 관계는, 미움과 오해와 서운함이 산처럼 쌓여가더라도 결국엔 그것을 조건 없이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과 미안함과 믿음을 잃지 않는다. 그건 ‘첫사랑’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다. 소녀가 어른이 되어갈 때, 그 성장통에는 엄마의 탓과 또한 엄마의 도움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 상·담·소 · 소 · 식



## 본소 창립 62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 – 호주제 폐지 10년, 사라지지 않은 호주제의 잔재 부성주의’를 주제로

상담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 – 호주제 폐지 10년, 사라지지 않은 호주제의 잔재 부성주의’를 주제로 가정의 달을 맞아 창립 62주년 기념 첫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소는 50여 년 간에 걸친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가족법개정운동을 통해 2005년 호주제 폐지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하여 2008년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착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 남녀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의 또 하나의 축이었던 민법 상 부성강제주의는 2005년 민법 개정 당시 단서조항의 신설로 부성주의 원칙이 완화된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성 승계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부와 모, 남과 여를 합법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성평등 이념과 가족복지 구현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따라서 본소에서는 민법에 여전히 존재하는 부성주의 원칙에 관한 본격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 걸음으로 위와 같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을 이끈 이번 심포지엄은 쉽지 않은 주제였음에도 이 주제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본소 광배희 소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대한변협 김현 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본소에서 진행한 ‘자녀의 성(姓) 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발표에 이어 ‘민법의 부계성본주의를 문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목으로 양현아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자로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권양희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 교육부,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 실시

본소에서는 지난 5월 9일 8층 강의실에서 서울시와 함께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에는 노숙인 시설이용자 및 시설종사자 40명이 참석했으며 시설이용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제도(본소 전규선, 박소연 상담위원),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남정환 부지부장),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제도(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서주거복지 마이홈센터, 박은정 차장),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오지현 과장)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강의가 끝난 후에 상담을 원하는 교육생들은 파산·면책, 신용회복, 주거복지 및 건강보험에 관한 개별상담을 하였다. 파산·면책·개인회생신청, 명의도용, 핸드폰 미납 요금 등의 다양한 법률상담과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상담, 신용회복절차 및 건강보험료 미납 관련 상담 등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에게 직접 관련 분야별로 교육과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관련사진 2면)

##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



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출장법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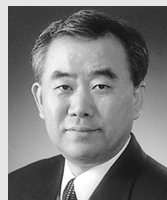
5.8 학교폭력예방교육1 - 승의여중  
천다라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북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박소연,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문득현, 김동규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5월 9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 미정 양육비상담부장의 방문을 받고 양육비 상담 과정과 상담 필요성, 발전 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5월 31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다.



조대연 본소 이사,  
‘서울대 법대 동창회장’으로 선출

본소 조대연 이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법연수원 9기)가 지난 달 31일 열린 서울대 법대 정기총회에서 제37대 서울대 법대 동창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조 이사는 미국 예일대 한국동창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 세계한인법률가회 국내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본소 이사 이외에 중재연수원 원장,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 광배회 소장, 본소 광고 기획회의

광배회 소장은 5월 10일 본소의 광고 전반을 기획하고 있는 베리모멘트 최성희 부사장, 최익환 부장 등과 본소의 페이스 북 광고와 관련하여 회의를 가졌다.

## ● ● ● 고맙습니다

### 2018년 5월 자원봉사자

####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한정희 님

####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서암, 김수운, 김진아, 김태주, 남기웅,  
박수열, 박효선, 배우미, 안서연, 유정아, 윤원섭,  
이지원, 이혜민, 장세호, 주소희,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연두, 송미란, 이승주,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변호사 님

#### • 학생 자원봉사

김하영, 김현서, 남서연, 민지은, 박소연, 박정현,  
박지수, 박현조, 배소희, 손지희, 이기일, 이수현,  
차시은, 최슬지, 최희원, 한 솔, 함솔희, 함채은,  
구가은, 김도영, 김소희, 김유진, 백다슬, 채서현,  
최승은, 허호재 님

### 후 원

#### • 일반회원이 되신 분

고은솔 님

####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 지·부·소·식

### 강릉지부

양성평등 부부교육,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5월 1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 구리·남양주지부

5월 1일, 4일, 15일,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장경아, 김효경, 황은하,  
정이수,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군산지부

5월 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상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가사조정을 4회,  
부모양육안내교육을 3회 실시하였다.

###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  
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6회, 광주시법원 2회 실시하  
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5회 실시하였다. 성남  
지역 초등학교 4학년 대상 폭력예방 순회교육을 6개교 28  
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5월 10일 성남시 평생학  
습원 진입로에서 '2018. 가정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  
다. 11일 LH 가정의 달, 찾아가는 원스톱 주거복지 행사에  
서 가정법률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문대근, 민진국 변호  
사가 소송구조를, 강은혜, 공영서, 김민주 변호사가 법률상  
담봉사를 하였다.

### 송도지부

5월 10일 인천 주안역 남광장에서 전국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정영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수원지부

한승일, 김진영, 박진호, 구민혜, 이국희, 강은혜, 전태우, 이윤선, 황미옥, 박지훈, 허정택, 김정혜, 서정식, 홍성민, 김소이, 전성철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순천지부

5월 1일, 8일, 15일, 29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10일, 24일, 31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 울산지부

5월 28일, 29일 울산가정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을 3회, 가사조정을 3회 실시하였다. 5월 15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장상담 및 소송구조 홍보를 실시하였다. 24일 젠더문화축제 행사장에서 가정폭력예방캠페인 및 법률구조사업을, 28일 전주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회의에서 법률구조사업 홍보를 실시하였다. 한지영 변호사가 소송구조를, 정아람, 이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중구지부

5월 10일 서울역에서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서울권역 가정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임유정, 박은정, 정형준, 이동진, 홍지혜, 여지은, 고승현, 박수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진주지부

5월 2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창원·마산지부

5월 8일, 14일, 28일 보호관찰소 위탁 위기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21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 사례연구회의에 참석하였고, 24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강은실, 강재현, 전철우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청주지부

5월 16일 충주 성모학교 교직원 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28일 청주지방법원 가정보호사건 담당 부장판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춘천지부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 2018년 4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8년 4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3,064건으로 본부가 7,041건, 지부가 6,023건이었다. 본부는 6,311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626건·소장 등 서류작성 69건·소송구조 35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120건·화해조정 816건·소장 등 서류작성 24건·소송구조 63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311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8년 3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2.5%→2.8%), 이혼(20.3%→20.8%), 사실혼해소(1.0%→1.1%), 친권·양육권(5.8%→6.5%), 양육비(8.0%→8.5%), 입양(1.6%→1.7%), 이혼무효·취소(0.2%→0.3%), 가족관계등록부(3.2%→3.9%), 친양자(0.6%→0.8%), 개명(0.7%→0.8%), 파양(0.3%→0.4%), 미성년후견(0.3%→0.4%),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6%→0.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에 관한 상담이 0.4%로 가장 많았다.

본부의 법률상담 6,311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86건(17.2%), 전화상담 4,978건(78.9%), 통신 및 인터넷상담 243건(3.8%), 서신상담 3건(0.1%),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 2018년 5월 본부 상담 통계

| 총상담 6,553    |          |      |    |
|--------------|----------|------|----|
| 법률상담 (5,918) |          |      |    |
| 면접           | 전화       | 통신   | 지상 |
| 1,080        | 4,579    | 258  | 1  |
| 화해조정         | 소장 등서류작성 | 소송구조 |    |
| 527          | 60       | 48   |    |

\* 2018/5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98,308건

| 지 부                      | 총상담    | 법률상담  |       |     |    |                | 합계     | 화해조정  | 소장 등<br>서류작성 | 소송구조 |
|--------------------------|--------|-------|-------|-----|----|----------------|--------|-------|--------------|------|
|                          |        | 면접    | 전화    | 통신  | 서신 | 기타             |        |       |              |      |
| 서울(본부)                   | 7,041  | 1,086 | 4,978 | 243 | 3  | 지상 1           | 6,311  | 626   | 69           | 35   |
| 강릉<br>(033) 652-9555     | 176    | 159   | 14    |     |    |                | 173    |       | 1            | 2    |
| 구리·남양주<br>(031) 551-9976 | 334    | 27    | 78    |     |    |                | 105    | 223   |              | 6    |
| 군산<br>(063) 442-1560     | 126    | 28    | 38    |     |    |                | 66     | 59    |              | 1    |
| 대구<br>(053) 745-4501     | 394    | 223   | 85    | 8   |    | 출장 5           | 321    | 73    |              |      |
| 대전<br>(042) 520-5258     | 243    | 31    | 211   |     |    |                | 242    |       | 1            |      |
| 동해<br>(033) 535-0188     | 76     | 21    | 54    |     |    | 출장 1           | 76     |       |              |      |
| 목포<br>(061) 273-2514     | 136    |       | 135   |     |    |                | 135    |       |              | 1    |
| 부산<br>(052) 667-2314     | 382    | 112   | 190   |     |    |                | 302    | 80    |              |      |
| 성남<br>(031) 707-6661     | 351    | 202   | 73    | 1   |    | 출장 16          | 292    | 52    | 4            | 3    |
| 송도<br>(032) 834-1369     | 157    | 39    | 56    |     |    |                | 95     | 51    |              | 11   |
| 수원<br>(031) 243-4600     | 417    | 126   | 110   | 2   |    | 출장 55          | 293    | 122   | 1            | 1    |
| 순천<br>(061) 753-9910     | 204    | 86    | 112   |     |    |                | 198    | 6     |              |      |
| 안동<br>(054) 856-4200     | 123    | 22    | 77    |     |    | 출장 1           | 100    | 22    |              | 1    |
| 울산<br>(052) 246-9568     | 102    | 27    | 63    |     |    |                | 90     | 4     | 3            | 5    |
| 익산<br>(063) 851-5113     | 294    | 80    | 211   |     |    |                | 291    |       |              | 3    |
| 인천<br>(032) 865-1120     | 387    | 131   | 220   |     |    |                | 351    | 25    | 2            | 9    |
| 전주<br>(063) 244-2930     | 292    | 124   | 133   | 27  | 4  |                | 288    |       |              | 4    |
| 청음<br>(063) 535-3705     | 82     | 19    | 57    |     |    |                | 76     | 4     | 1            | 1    |
| 제천<br>(043) 644-5690     | 136    | 60    | 71    |     |    |                | 131    |       | 2            | 3    |
| 충구<br>(02) 2238-6554     | 463    | 289   | 171   |     |    |                | 460    |       |              | 3    |
| 진주<br>(055) 746-7975     | 107    | 29    | 48    |     |    |                | 77     | 23    |              | 7    |
| 창원마산<br>(055) 261-0280   | 255    | 100   | 147   |     |    |                | 247    | 6     | 1            | 1    |
| 청주<br>(043) 257-0088     | 206    | 70    | 80    |     |    |                | 150    | 50    | 6            |      |
| 춘천<br>(033) 257-4688     | 314    | 23    | 20    |     |    | 출장 271         | 314    |       |              |      |
| 태백<br>(033) 554-4004     | 64     | 21    | 25    |     |    | 출장 18          | 64     |       |              |      |
| 평택안성<br>(031) 611-4251   | 135    | 37    | 63    |     |    | 출장 16          | 116    | 16    | 2            | 1    |
| 포항<br>(054) 283-7555     | 67     | 1     | 66    |     |    |                | 67     |       |              |      |
| 지부총상담                    | 6,023  | 2,087 | 2,608 | 38  | 4  | 출장 383         | 5,120  | 816   | 24           | 63   |
| 총 상담                     | 13,064 | 3,173 | 7,586 | 281 | 7  | 출장 383<br>지상 1 | 11,431 | 1,442 | 93           | 98   |

\*\* 2018/4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88,617건

##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 가출과 외박을 반복한 무책임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352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7세)와 피고(남, 46세)는 1998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 1(여, 19세), 사건본인2(여, 18세)를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불성실한 태도로 한 직장엔 오래 다니지 못하였다. 원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였고, 원고의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피고는 혼인 후 외박이 매우 잦았는데, 보통 일주일에 이틀은 외박을 했고, 가출도 잦았다. 피고의 잦은 외박 및 가출은 가정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졌고, 이는 부부간의 대화 부족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피고는 2016년 가출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고,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 4.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사건본인1의 양육비로 1,500,000원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2의 양육비로 2017. 12. 28.부터 2019. 7. 22.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를 안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355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8세)은 1994년경 배우자와 혼인 후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가정주부로서 생활하였다. 배우자는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고 승진도 하여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2013년경 배우자가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 모은 재산과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경제불황으로 가게 월세와 종업원들의 임금을 주기 어려운 상황까지 처하였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신청인 또한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해 찢찢맷고, 고민 끝에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을 이용하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는 계속된 적자를 극복하지 못해 폐업하였고,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반면, 신청인은 개인회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채무를 조금씩 변제하던 중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 납입하지 못하였고,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 이에 다시 한 번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앞으로의 채무상환은 어렵다고 생각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3. 29.)

채무자를 면책한다.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녀관계를 밝힘



법률구조 2017-360

담당 : 전성배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36세)는 피고(여, 62세)와 이OO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다. 피고는 이OO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던 중 원고를 임신하였다. 피고는 이OO의 외도 및 생활비 미지급으로 이OO과의 동거생활을 정리하고 홀로 원고를 양육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OO의 법률상 배우자인 김O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어 있었으나, 2016년 6월 광주가정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와 피고의 모녀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 3. 22.)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도박과 알코올 중독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7-398

담당 : 김지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신청인(여, 57세)과 피신청인(남, 60세)은 1985년 4월 혼인한 법률혼 관계로 슬하에 1남 2녀의 성년 자녀를 두었다. 피신청인은 신혼 초부터 술과 도박에 빠져 도박장과 경마장을 쫓아다니며 가정을 등한시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고나면 술에 취해 신청인과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언을 하였고, 신청인이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어렵게 번 돈을 강제로 뺏어 도박에 탕진하고 결국에는 가족이 살고 있는 반지하방의 보증금을 날리기도 하였다. 피신청인의 기분에 거슬릴 때는 신청인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신청인과 아이들은 항상 공포와 불안감에 떨며 지냈다.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는 전적으로 신청인이 책임을 졌고,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기 몫을 보냈지만 피신청인은 가장으로써 일말의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과 아이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탕진하였다. 또한 둘째딸의 대학등록을 위해 어렵게 마련해둔 1000만원을 써버려 아이는 결국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국민주택청약을 마음대로 해지하여 탕진해버렸다. 그러던 중 2017년 9월 3일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폭력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가 친정으로 피신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17. 2. 2.)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018.2.5. 까지 14,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위 제2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가정법원 2017즈단000호 채권가압류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4. 가. 피신청인은 새로운 주거지를 구할 때 까지 신청인 소유의 물건들을 피신청인의 현재 주거지에 보관하여 주도록 한다. 다만 그 기한은 2018.3.31.까지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가.항 주거지 내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물건(옷, 화장품, 수납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승낙없이 신청인의 새로운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기로 하고, 신청인을 모욕하는 전화연락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로 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위반 시 1회 위반 당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7. 신청인은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실종선고로 사망자로 등록된 노숙인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 판결



법률구조 2017-412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실종선고 취소

**내용 :** 청구인 겸 사건본인(남, 59세)은 혼인하여 아내와 딸이 있었으나 가정불화 및 개인사정으로 30년 전 노숙을 시작하였다. 2015년 청구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사망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최근 청구인은 노숙인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다친 팔을 수술 받으면서 실종선고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사회로의 복귀를 위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18. 3. 13.)

부산가정법원 2014년단000호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2.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사건진행 관련 후기입니다.

저의 작은 노력으로 인해 도움을 얻은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니, 제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실종선고취소 사건의 경우, 실무상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사건을 진행하며 처음 알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다른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몇 글자를 적습니다.

실종선고취소 사건의 경우, 행정적으로 당사자가 이미 사망 처리된 상태여서, 당사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들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보정 사항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보정사항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절차는 십지문조회입니다. 위 절차는, 법원이 최후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실조사촉탁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최후주소지는

부산 남구, 현재 거소지는 서울 용산구였는데, 실종선고취소 사건에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최후주소지와 현재 거소지가 상이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 당사자가 최후 주소지가 아닌 서울의 보호시설에 현재 거주 중인 점, 당사자가 현재 거주지에서 부산까지 내려올 여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거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십지문조회를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당사자가 거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십지문조회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견을 별도로 개진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대로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실조사촉탁을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기계적으로 당사자의 최후 주소지에 찾아간 다음 해당자가 살고 있지 않아 십지문조회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올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십지문조회 때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십지문조회절차를 밟기 어렵다면, 법원에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편리한 곳에서 십지문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 사업실패로 채무를 안게 된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462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8세)은 1999년경 기업체 사내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지문인식 시스템을 개발한 신청인은 생체인식 시스템(지문, 홍채 등)을 시장에 진출시키고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5억 원을 보증 받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리하여 순조롭게 제품개발을 마친 신청인은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제품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하였다. 신청인은 추가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소유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을 이용하였으나 한계가 있었고, 계속된 적자로 인해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 식당, 조식소, 공사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소득이 적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친모의 거주지(SH임대주택)에서 무상거주하며, 림프암 및 뇌출혈을 앓고 있는 친모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병환 중인 친모를 간병하며 일용근로를 하고 있는 신청인은 1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4.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과도한 음주와 폭력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과의 이혼조정**

**법률구조 2017-438**

**담당 :** 임소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피고(반소원고, 여, 40세)와 원고(반소피고, 남, 46세)는 2010년 10월 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7세, 남 6세)을 두었다. 원고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분노조절이 안되었고 신혼 초부터 과도한 음주습관을 보이며 폭력적인 행동과 폭언을 하곤 하였다. 원고는 늘 만취상태이거나 귀가 시 소주 1~2병을 사와서 마셨고 수시로 욕설을 하며 피고에게 모멸감을 주었다. 또한 피고는 집안의 물건을 다 부수고 임신 상태인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칼로 위협하고 피고와 뱃속의 아이를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원고는 1366에 신고하여 피고를 전문가로부터 알콜치료와 폭력상담을 받게도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력이 반복되어 원고는 가정폭력 쉼터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둘째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도 이러한 폭력은 계속 되었고 외도까지 일삼으며 돈을 탕진하고도 오히려 피고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칼로 위협하고도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도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3.2.)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분할하여 500만원은 2018.4.30.까지, 500만원은 2018.6.30.까지 각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위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반소피고)가 보험계약자이고 피고(반소원고)가 피보험자인 00화재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반소원고)로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가 보험계약자이고 사건본인들이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 또한 계약자 명의를 피고(반소원고)로 변경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3.15.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15일에 사건본인 1인당 월 35만 원씩을 지급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매월 1회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접교섭 할 수 있다. 다만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7.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 포기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후, 합의를 통해  
미지급 양육비 전액 수령**

**법률구조 2018-61**

**담당 :** 김미진 변호사

**사건명 :** 부동산강제경매

**내용 :** 채권자(여, 35세)와 채무자(남, 41세)는 2004년 10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0세, 6세)을 두었지만,

2016년 9월 재판상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16년 8월 30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50,000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사건의 부동산 세입자로부터 경매신청에 대한 항의를 받았다고 하며, 지금까지 미납된 양육비 10,500,000원을 채권자에게 입금한 입금확인증을 제시하였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와 장래 양육비 및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연락을 원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미지급 양육비를 전부 지급받게 되어 본 사건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취하되었다.

**결과 :** 취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3. 12.)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게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7-275**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8세)과 피신청인(남, 49세)은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21세, 19세)을 두었으나, 2002년 1월 협의이혼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피신청인은 구두로 양육비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이혼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도리어 돈을 달라고 하였다. 양육비는 지급된 적이 없었으며, 신청인은 화장품 판매원, 마트 계약직 등으로 일하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혼자 힘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가 불가능하여, 2015년에 피신청인에게 양육비심판 청구를 하였다. 그 결과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5,000만원,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15년 12월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

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양육비심판 청구 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가정법원 2018. 4. 13.)

1. 피신청인은 부산가정법원 2015노단0000 사건의 심판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과거양육비 50,000,000원을 분할하여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한 달부터 5,000,000원씩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미지급 과거양육비에 대하여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및 학원비 지급 등으로 양육비 조정**

**법률구조 2017-325**

**담당 :** 장미애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청구

**내용 :** 청구인(여, 44세)과 상대방(남, 47세)은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9세, 16세)을 두었으나, 2008년 2월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7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월 160만 원 정도의 수입만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야 했다. 그러나 사건본인들이 자라면서 청구인의 월급만으로는 양육비를 충당할 수 없어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0회에 걸쳐 월 70만원, 첫째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 150만원, 2016년 1월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간헐적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4. 24.)

1. 피신청인은 2018. 6. 1.부터 사건본인 ‘○○○’, ‘◇◇◇’의 대학교 등록금을 책임지고 부담한다.

2. 피신청인은 사건본인 ‘◇◇◇’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대학입학 전까지 1강좌 분의 학원비를 책임지고 부담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종으로 작성된 것을  
등록부정정으로 바로잡음**



**법률구조 2017-366**

**담당 : 윤원섭 변호사**

**사건명 : 등록부정정**

**내용 :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4살 무렵 친오빠와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의뢰인이 12세 때 의뢰인의 당시 14세이던 오빠가 고아원에서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고아원에서 중 고등학교를 마친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배우자를 만나 아들을 낳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2007. 9. 경 의뢰인의 모와 언니, 오빠가 수 소문 끝에 의뢰인을 찾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 실제 나이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고아로써 새로운 호적을 취득하였고 이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의한 의뢰인의 나이(1959년생)는 실제 나이(1961년생)보다 2살이 더 많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이 일자리를 찾는 데도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특히 의뢰인은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아들에게도 자신이 고아인 사실이 누가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법률상담소를 찾게 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는 단지 본래 이름과 실제 나이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원망 하였던 부모와 형제들과 화해하고 마음 한 편에 쌓였던 응 어리를 해소하는 의미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됐다며 행복해 하는 의뢰인을 보면서 본 변호사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가정법률상담소에도 감사드립니다.

**결과 :** 승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14.)

1. 본적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이하생략의 호주 임○○의 제적부는 이종제적부이므로 전부 말소하고,
2. 본적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이하생략 호주 임△△의 제적부 중,

가. 사건본인 임□□의 혼인란에, 위 말소된 1항 기재 제 적부 중 사건본인 임○○의 일반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서 기 1988년 6월 ○일 박○○과 혼인신고. 동월 □일 서울시 용산구청장 송부”를 이기하고,

나. 사건본인 임□□의 입적 또는 신호적란에 “서울시 용 산구 원효로2가 이하생략 호주 박○○의 처”를 이기하고,

3. 본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이하생략 호주 박 ○○의 제적부 중,

가. 호주 박○○의 혼인란의 “[배우자]임○○”를 “[배우 자]임□□”으로 정정하고,

나. 처로 기재된 사건본인 임○○의 호적을 전부 말소함 과 동시에 이 제적에 사건본인 임□□을 ‘별지 신분표’와 같이 이기 입적한 후 이를 제적하고,

다. 자로 기재된 박△△의 모란에 기재된 “임○○”를 “임 □□”으로 정정하고

4. 위 3. 나항의 제적된 사건본인 임□□의 호적 기재 사 항을 기초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3길 이 하생략에 사건본인 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5.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3길 이하생략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 박○○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배우자란에 사건본인 임○○를 말소함과 동시에 사건본인 임□□을 기재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배우자]임○○”를 “[배우자] 임□□”으 로 정정하고,

나. 박△△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모란에 사건본인 임○ ○를 말소함과 동시에 사건본인 임□□을 기록하고,

6. 등록기준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이하생략 사 건본인 임□□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등록기준지 서울특별 시 용산구 원효로53길 이하생략 사건본인 임○○의 가족관 계등록부는 이를 전부 폐쇄하는 것을 각 허가한다.

•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윤원섭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 지면관계 상 소송구조 결과를 다 실지 못하거나, 게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2박3일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18년 7월 21일(토) 오전 9시 / 7월 23일(월) 오후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장소 :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
- ▶ 내용

###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5. 「해양레포츠 체험 및 해변 물놀이」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 일시 : 2018년 1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 일정 및 주제

| 일시      | 강 의 제 목                          |
|---------|----------------------------------|
| 6월 28일  | 5.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
| 7월 26일  | 6. 다름과 다양성                       |
| 9월 27일  | 7. 외도에 대한 대처                     |
| 10월 25일 | 8. 분노 조절 장애                      |
| 11월 22일 | 9. 과거 관계가 부부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들 |
| 12월 27일 | 10. 실제 부부사례로 살펴 본 치료상담           |

2018년 6월

교/육/강/좌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 6월 11일 / 6월 25일 )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 동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의 일정 및 주제

| 일 정     | 강 의 제 목                             | 강 사                     |
|---------|-------------------------------------|-------------------------|
| 6월 14일  | 우 울 : 우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 우애령                     |
| 7월 12일  | 평 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
| 9월 13일  | 분 노 : 뜻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 이서원                     |
| 10월 11일 | 평 안 : 고통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만드는 법을 배운다    | (한국분노관리 연구소 소장)         |
| 11월 8일  | 열등감 : 성장과 변화로 가는 에너지                | 정윤경                     |
| 12월 13일 | 자존감 : '나는 나다'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기념 토론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사이,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와 지향점

2018년 6월 29일(금). 오후 2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 좌장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주제 발표 | 이서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 토론 발표 | 김진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양혜원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성남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조성균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

|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연구 결과 발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